금융위원회

의결 제2026-95호

1. 조치대상자의 인적사항

제재대상	내용(회사명, 성명 등)
기 관	메트라이프생명보험㈜

2. 조치내용

□ 기관에 대한 조치

◦ 과태료 408백만원 부과

3. 조치이유

가. 지적사항

□ 기 관

1. 임원 선임 관련 공시 및 보고 의무 위반

◦ 금융회사는 임원을 선임한 경우 그 사유발생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임원의 자격요건 적합여부 또는 해임사유 등을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고 해당 금융회사 및 관련 금융협회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여야 하나,

- 메트라이프생명보험㈜(이하 '회사')는 '21.7.1. ○○○ 이사, '22.1.25. 및 '23.2.14. ○○○ 이사를 각각 재선임하면서 선임일

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금융감독원장에 보고, 회사 및 생명보험협회 홈페이지에 공시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

2. 지배구조 연차보고서 부실 공시

◦ 금융회사는 '금융회사와 사외이사 등이 소속한 기관과의 계약체결 내역' 등을 포함한 지배구조 연차보고서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여야 하는데도,

- 회사는 사외이사 ○○○의 임기('19.4.1.~'25.3.31.) 중 동 사외이사가 소속되어 있었던 법률사무소와 21건(128백만원)의 법률 관련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해당 법률사무소와 체결한 법률자문, 노무컨설팅 및 등기업무 계약체결 내역을 누락한 채 2019년~2024년 지배구조 연차보고서를 작성하여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부실 공시하였음

3. 대주주와의 거래제한 관련 보고 및 공시 의무 위반

◦ 보험회사는 대주주가 발행한 주식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한 경우 7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여야 하는데도,

- 회사는 2020.10.22.~2025.8.4. 기간 중 대주주가 발행한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16회 행사하고도 해당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지 아니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

4. 투자권유준칙(변액보험 계약권유준칙) 공시 의무 위반

◦ 금융투자업자는 투자권유를 함에 있어서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이

준수하여야 할 구체적인 기준 및 절차(이하 “투자권유준칙”)를 정하여야 하며, 이를 제정·개정한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하는데도,

- 회사는 원금손실 가능성이 존재함에 따라 「자본시장법」의 적용을 받는 상품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에게 적합한 보험계약의 체결을 권유하기 위해 회사 또는 모집종사자가 준수해야 할 구체적인 기준 및 절차를 변액보험 계약권유준칙으로 정하여 이를 제정·개정한 사실이 있음에도, 검사 착수일까지 해당 투자권유준칙을 회사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

나. 근거법규

□ 기관에 대한 조치

○ 舊「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」 제7조 제2항
○ 「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」 제14조 제3항 제2호
○ 「보험업법」 제111조 제3항 제3호
○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50조 제2항